

# 「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」 근로소득세 감면신청 안내

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수령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만기공제금은 크게 기업기여금, 근로자납입금, 이자, 정부지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기업기여금, 근로자납입금, 정부지원금은 원천징수 없이 전액수령하며 이자소득은 15.4% 세율로 원천징수 후 수령 받으시게 됩니다.

이 중 중소기업에서 납부한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으로, 중소기업의 경우 50%(청년근로자 90%), 중견기업의 경우 30%(청년근로자 50%) 세액감면을 받으시기 위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 (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)

- ① (근로자) 만기공제금 신청
- ② (중진공) 만기공제금 지급
- ③ (근로자) 기업세무담당자에 감면세액 신청서를 제출 (익월 말일까지)
- ④ (기업세무담당자) 근로소득 감면세액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
- ⑤ (기업세무담당자) 연말 지급명세서 및 연말정산 근로소득 반영

기한 내 미신청 시 세액감면을 받지 못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\* 특수관계인은 해당사항 없음

## □ 신청 절차

- ① (근로자) 만기공제금 신청, 수령 이후, 「감면세액 신청서」를 작성하여 기업세무담당자에 제출

- (신청대상) 만기공제금 수령자 중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[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 각 호]

1.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)와 그 배우자
  2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\*에 있는 사람
- \* 4촌 이내의 혈족, 3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(사실혼을 포함),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·직계비속 등

- (신청방법) 첨부된 근로소득 감면세액 신청서 작성하여 기업 세무담당자에게 제출

- (신청기한) 만기공제금을 수령한 달의 **익월 말일** 까지

ex) 5.31일 만기공제금 수령 → 6.30일 까지 감면세액 신청서 제출

② (중소기업세무담당자) 「근로소득 감면세액 명세서」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

- (제출대상) 근로소득 감면세액 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(중견)기업
- (제출방법) 첨부된 근로소득 감면세액 명세서 작성하여 세무서 서면제출
- (신청기한) 신청서를 수령한 달의 **익월 10일까지**  
 ex) 5.31일 만기공제금 수령 → 6.30일 까지 감면세액 신청서 제출 → 7.10일 까지 감면세액 명세서 제출

③ (중소기업세무담당자) 연말 지급명세서 및 연말정산 근로소득 반영

- (제출대상) 근로소득 감면세액 명세서를 제출한 중소(중견)기업
- (제출방법) 연말 지급명세서 제출시 근로소득지급액에 반영 및 연말정산 수행

<만기 공제금 지급시 기업기여금 원천징수 방안>

수행주체	세부 절차	기한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	만기공제금 지급 및 원천징수 제외	공제금 지급 기한
핵심인력	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 감면세액 신청서 제출	공제금 수령 <b>익월 말일</b>
원천징수의무자(중소기업)	근로소득 감면명세서 국세청 제출	신청서 접수 <b>익월 10일</b>
	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	공제금 수령 <b>익년 2월말</b>

##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

1. 신청인	① 성명	② 주민등록번호	
	③ 주소	④ 근로자 유형	[ ] 청년(15세~34세) [ ] 그 외

### 2.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 기간(5년)

⑤ 가입일	년 월 일
⑥ 종료일	년 월 일

### 3.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서 만기 시 수령한 공제금

⑦ 총 수령 금액	원
- ⑧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(감면대상)	원
- ⑨ 근로자가 납부한 공제납입금(既 과세)	원
- ⑩ 그 외 금액(이자소득세 과세)	원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원천징수의무자 귀하

첨부서류	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서 공제납입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

#### 유의사항

-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.
- 감면을 신청한 경우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만기 시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세의 50%(청년근로자 90%), 중견기업의 경우 30%(청년근로자 50%)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
##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

1. 원천징수의무자	상 호	사업자등록번호	
	사업장소재지 (전화번호 : )	원천징수의무자 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중견기업

### 2. 감면 적용 대상자 명단

성 명	주민 등록번호	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가입일	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종료일	만기 시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 금	근로자 유형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  
(서명 또는 인)

원천징수의무자

세무서장 귀하

#### 작성방법

- 만기 시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란에는 기업이 해당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을 위하여 성과보상기금 가입일부터 종료일까지 성과보상기금에 부담한 기여금 총액을 적습니다.
- 근로자 유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0호의6서식)의 근로자 유형과 동일하게 청년(15세~34세)과 그 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